

통관환경보고회

인니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2012. 4. 25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득수 관세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CONTENTS

- I 최신 관세 동향
- II 보세법규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 III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IV 질의 회신 및 애로해소사례



0100010111010111010100010111010100
0100010111010111010100010111010100

1. 무역 및 관세동향

- 자원강국, 투자 유망 신흥시장 :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해결과제
 - 인구 2억 4천만, 1인당 GDP US\$3,000불('11), 경제성장률 6.3%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인-아세안(2011) FTA 등
 -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2012.3)
 - 개방 속 비관세장벽 확대 추세

- Customs 2020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2012 AEO 도입예정
 - 세관인력, 프로세스 혁신, 세관 현대화 및 전산화 등

- Agung 청장 주요 관세정책
 - 관세행정 혁신 및 부정부패 척결 (대통령 및 재무부장관 지시사항)
 - 관세수입 증대, FTA 악용 불법 수입, 밀수 등 단속 강화
 - 성실한 업체 최대 지원, 고 위험업체 세관통제 강화

2. 한-인니 관세협력 동향

-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11.2, 발리)
 - IT 기술지원, AEO 도입 지원 및 마약 등 부정무역 정보교환 협력
 - ※ 제2회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개최 예정 ('12년 9월, 서울)

- 한-인니 원산지 검증협력 MOU 체결 (11.2, 발리)
 - AK FTA원산지 검증,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 강화
 - ※ 한국관세청, 인니 관세청, 인니 무역부 3자 MOU

- FTA 활용제고를 위한 한-인니 국장급 회의 개최 (11.10, 자카르타)
 - FTA 활용제고방안 협의, 한인기업 통관애로 해소 요청
 - ※ 한-아세안 FTA 활용율 : 인니 29%, 한국 67% 수준

- 관세청, 인니 세관 국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10~12년, 45명)
 - 인니 관세현대화 사업 전면 지원

3. 인니 AEO 추진 동향 및 한-인니 협력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무역안전인증업체)란
 - 관세당국이 공인한 무역안전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혜택부여
 -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 AEO와 자국 AEO 동등 인정

- 인니 추진동향
 - 2010년 관세법규 및 재무부장관령 (No 219-2010) 제정
 - 2012년 관세청장 고시제정, AEO 업체 지정 등 도입 예정

- 한-인니 MRA 체결 추진 (2013년)
 - 인니 세관직원 한국 AEO 연수(11.10), AEO 워크숍 (11.11, 반등)
 - 시범사업, 상호 방문 실사→ 한국과 MRA 체결예정

4. 인니 관세당국과 주요 관세이슈

- 봉제업체 하청문제
 - 재무부 장관령(PMK 147) : 주요공정을 제외한 하청 허용 (12.1.1)
 - 재무부 장관령(PMK 255) : 2012.12.31까지 하청허용 (12.2.1)
 - 재무부 장관령(PMK 44) : 하청규제 철회 (12.3.16)

- 선적전 발급 FORM AK 인정문제
 - 원산지 OCP 제7조 :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 인니 측 불 인정 : OCP 개정 요구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 ☞ 양국정부 OCP 개정합의, 규정 개정 전까지 선적일전 발급 Form AK 발급일 수정
세관에 제출

- 중-아세안 FTA : 제3국 송장 발행 허용 (2011. 10월)

II. 보세구역 개정법규 동향



1. 개정 배경

□ 개정법규 (2012.1.1 시행)

- 보세창고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 PMK 143 (11.12.6 시행)
-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 PMK 147 (12.1.1. 시행)
-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 PMK 255 (12.2.1. 시행)
-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 PMK 44 (12.3.16. 시행)

□ 개정 배경

- **보세구역 제도 원래 기능 환원** : 수출지원정책
- 서비스 향상과 **보세구역 통제강화** : Risk Management 도입
- 보세구역 관리 전산화 (Automation)
- **보세구역 위치 통합** (Clustering) : 서비스와 감독 효율화
- 관련업계 제안 수용 및 대통령 직속 개발감독 특별관 지적 후속조치

11. 보세구역 개정법규 동향

2.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에서의 **하청제한** (PMK 147, 제 39조, PMK 255 제56 A조)
 - 종전규정 : 보세구역에서 일부 하청 가능
 - PMK 147 개정규정 : 하청대상 중 주요 공정 제외 (2012.1.1. 시행)
(핵심공정(재단, 봉제 등) 에 대한 하청 제외 명확화)
 - **PMK 255 1차개정 : 법규준수도 고려 최장 2012.12.31 까지 허용**
 - **PMK 44 2차 개정 : 주요공정 하청규제 철회(12.3.16)**

-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PMK 147, 제 6조 제4항, 제5항)
 - 산업지역 : 허가기간 까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 산업지역 이외 지역 : **보세단지 : 5년, 보세업체 : 3년**
 - 연장신청 : 2012. 5. 23 까지 (미 연장신청 시 혜택 중지)

11. 보세구역 개정법규 동향



2.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위치제한** (PMK 147, 제4조, PMK 255 제 56A조)
 - 공단지역
 - 공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지역
 - 특별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산업
 - 중·소 공업단지
 - 경작지역 보세구역 : **2016.12.31 까지 이전, 최소 10,000 M2 확보**
(PMK 255 개정을 통해 당초 2014에서 2년 더 유예)

 - 보세구역 **국내판매 제한** (PMK 147, 제 27조 제7항)
 - 보세구역 국내 완제품 판매 제한: 수출 또는 보세구역 총 판매액의 25% 로 제한
- ★ **삼성, LG 등 대기업 국내 판매 제한 완화방안 검토 중**

11. 보세구역 개정법규 동향

2.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Risk Management (PMK 147, 제2조)
 - 기업 프로파일 관리
 - 우수 업체 : 서비스 최대화, 감독 최소화
 - 불성실 업체 : 서비스 최소화, 감독 최대화

- 보세구역 주요 의무사항 (PMK 147, 제 19조, 제20조)
 -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 프로그램 의무적 사용 : 2012.12.31 까지 설치
 - 최소한 1년에 한번 재고조사 시행
 - 모든 관련 서류는 10년 보관 의무

THINGS TO REMEMBER

- 1. DO NOT USE KB, GB OR KITE IF YOU ARE TRADER.**
- 2. FOR BONDED ZONE (KB), “SUBCONTRACT” APPLIES FOR SUBSIDIARY PROCESS ONLY. MAIN PROCESSING MUST BE DONE IN KB.**
- 3. MUST OBEY REGULATION REGARDING RESTRICTION/PROHIBITION.**
- 4. INFORMATION TECHNOLOGY IS A MUST!**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1. 수입통관제도

- **선통관 후심사 원칙** (Post Audit System)
 - 수입자 신고납부 → 세관 사후 심사 실시
 - 통관 후 2년 이내 사후심사
- 수입자 필수 구비사항
 -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허가(APIU), 세적등록(NPWP)
 -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수입자허가 등
- 수입통관절차
 - 제세 은행납부 후 신고서 전송 (EDI) → 세관접수 → 원본제출
→ 검사 및 심사 → 통관승인 → 반출

〈 수입자 유의사항 〉

- 선적서류는 원본 제출
- 화물검사 시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 고액 벌금 등 처벌
- 정확한 수입신고
 - 실수수요자 B/L, Manifest 상 불일치 → **통관불가, 반드시 정정**
(2~3주 소요)
 - 선적서류 상 수량, 중량, B/L No, C/T No 등 일치
 - 명확한 품명 명시 → **통관 지연사유**가 될 수 있음
- ☞ 수입신고시 법규위반은 신용도에 영향, 고위험업체 분류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2. 수입자 Channeling System (위험관리제도)

구 분	주요 내용	지정기준
MITA (최우수)	서류 및 물품 검사 면제	신용도, 제정력 우수 평판 우수
Priority Channel (최우수)	통관 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신용도, 제정력 우수 평판 우수
Green Channel (우수)	통관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통상 제조업 Yellow 지정후 3개월 간 우수기록 보유
Yellow Channel (위험)	통관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Red 지정후 1년간 우 수 기록 보유
Red Channel (고위험)	통관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신규수입, 고위험 품목 수입, 고위험 신용도 등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참고 : MITA 요건 >

- 좋은 평판
- 사업 성격 명확
- **성실신고 기록 보유**
 - 정확한 수량, 품명, 신고가격 신고
 - 최근 1년 이내 관세법규 위반 사실 무
- 관세체납 사실 무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 적정
- **EDI 시스템에 관한 지식 및 역량 보유**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Channel 분류 심사 시 신용도 및 인니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주는게 중요
- RED Channel 지정시 통관지연 등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Yellow Channel 이상 지정 받도록 관세법규 위반 내지 신고오류를 하지 않는 게 중요**

3. 관세평가 및 이의신청제도

- KPU 세관당국은 자체 세관기준에 의거 심사강화
 - 기존 수입화물 가격 DATABASE 를 통해 가격확인
 - WEB 검색을 통한 가격확인 (On Line Market)
 - 시장가격 확인을 통하여 심사 (Off Line Market)

- 일 평균 100건 정도의 조정관세 고지

※ **조정관세 시 벌금** (PP No28, ' 08.4.1. 시행)

- 기존 최대 500% → 1,000% 로 상향 조정

- 세관 확정가와 차액에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25% 이하 **100%**, 25~50% **200%**, 50~75% **400%**, 75~100% **700%**

100% 이상 **1,000% 부과**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신청 제기 :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입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중요**
 - 제출서류 : 신청서, 가격 증빙자료 (계약서, 송금 자료 등)
 - 부과액 만큼 예치금 담보 필요
-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및 통보
 - 조정관세 또는 벌금 총액이 **1억 루피아 이상 : 법인 방문조사**
 - 결정 : 인용, 기각, 재조정, 취소
- 이의신청 불복 시 조세법원 (Banding)
 - 고지금액의 50% 납부 후 불복 제기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60 일 이내 제기**
 - 조세법원은 60일 이내 결과 통보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4. 인니 FTA 제도

SCHEME	FTA PARTNERS	LEGAL BASIS
AFTA (Form D) <i>(ASEAN Free Trade Area)</i>	ASEAN Countries	PMK 125/PMK.010/2006 PMK 129/PMK.011/2007 PMK 247/PMK.011/2009
AK-FTA (Form AK) <i>(ASEAN Korea - Free Trade Area)</i>	Republic of Korea	PMK 236/PMK.011/2008 PMK 200/PMK.011/2009
AC-FTA (FORM E) <i>(ASEAN China - Free Trade Area)</i>	People's Republic of China	PMK 235/PMK.011/2008
IJ-EPA (FORM JI EPA) <i>(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	Japan	PMK 95/PMK.011/2008 PMK 96/PMK.011/2008
AI-FTA (FORM AI) <i>(ASEAN-India Free Trade Area)</i>	India	PMK 144/PMK.011/2010
ANZA-FTA (Form AANZ) <i>(ASEAN-New Zealand-Australia Free Trade Area)</i>	New Zealand Australia	

< 인니 FTA 특혜관세 심사지침 제정 및 개정 >

- 심사지침 제정 (SE 05/BC2010, 2010. 3. 23)
 - 특혜관세 적용 : Form AK 수입 신고 시 제출
 - 원산지 증명서 :
 - 영어로 작성, A4 사이즈, 선적 후 3일 이내 발급원칙
 - 선적 후 3일 이후 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 심사지침
 - Form AK 원본제출여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 발급 책임자 서명, 진위여부 등
 - 원산지 기준 적정 명시(WO, CTH, RVC40% 등)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심사지침 개정 (SE 16/BC2010, 2010. 8. 4)
 - 개정 배경 : 무역부장관 심사지침 일부 유보 요청

 - 선적일전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처리기준
 - IIEPA (Form IIEPA), AFTA (Form D) : 유효
 - AC FTA (Form E), **AK FTA (Form AK) : 7.31 이전 수입신고 유효, 8.1 이후 불인정**

 - 소급 발급 C/O “Issued Retroactively”
 - 스탬프 없을 경우 특혜 불인정 → 신고내용 검토 후 인정 가능

 - Minor Discrepancies 사유 명시
 - 제품설명, 수출자 이름, 주소, 선명, 소급발행인이 없을 경우 등

THINGS TO REMEMBER

- **FORM AK MUST BE ORIGINAL.**
- **FORM AK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 **DO NOT FORGET TO FILL IN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AK-FTA IN THE CUSTOMS DECLARATION (FACILITY CODE NUMBER, NUMBER OF FORM AK, ETC).**
-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C FTA 2YEARS, OTHER 3 YEARS)**

What To Do During Customs Clearance To Benefit Preferential Tariff Under AKFTA Scheme

1. Complete all columns in PIB (import declar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gular importation, except for columns 19, 32 and 34 as follows :

➔ Column **19** regarding Customs Facility :

- preferential tariff code, number **55**
- Form AK's Reference Number and date of issuance

➔ Column **32** regarding HS Code :

HS tariff classification based on Indonesian Customs Tariff Book (BTBMI 2007)

➔ Column **34** regarding tariff & facility :

Tariff rate of AKFTA based on MOF's Decree Number 236/PMK.011/2008

2. Attach the valid Form AK to PIB and submit it to Customs Office at the port of Entry.

Problems

1. Difference in HS Classification and/or Customs Value between those stated in Form AK and those determined by Customs.
2. Form AK is rejected by customs because of these common issues:
 - Stamp and Signature of Issuing Authority on Form AK is not identical to the specimen provided by member state.
 - There is a doubt in the origin criteria of the goods imported.
3. Form AK has not been publish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so the Importer cannot submit it to Customs.
4. Preferential tariff is not given because the importer does not follow the procedures during customs clearance (as stated above)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 **[개요]** 아세안 10개국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 상품무역협정 ('07.6월), 서비스협정 ('09.5월), 투자협정 ('09.9월)순으로 순차적 발효
- **[양허스케줄]** 모든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 세부 품목은 당사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분류
 - [일반품목] 품목수 90%이상, 수입액 90%이상
 - [일반민감품목] 품목수 6~7%, 수입액 7% / [초민감품목] HS 6단위 200개, 수입액 3%이하

〈한-아세안 FTA 양허 내용〉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한국, ASEAN 6	'10년까지 관세철폐	12년까지 20%로 인하 '16년까지 0~5%로 인하	국가별, 연도별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 허용 [양허제외 등]
베트남	'16년까지 관세철폐	'21년까지 0~5%로 인하	
C L M	'18년까지 관세철폐	'24년까지 0~5%로 인하	

5. 기타 주의할 관세 및 통관제도

- 수입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 2012.6.19 시행
 - 수입신선 농산물 (과일 및 채소류)
 -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 폐쇄 → 수라바야 Tanjung Perak 항구
 - 자카르타 항구 과부하, 농산물 안전성 확보 차원

- 국가표준 인증품목(SNI : Standard National Indonesia) : 2007.7 시행
 - 73개 사전 SNI 인증 후 수입통관
 - 금년, 인니 정부 564개 (성유제품 438개) 확대 추진
 - 생수, 소금, 철강제품, 비료, 전선, 열간 압연강판 및 코일 등

III. 세관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5. 기타 주의할 관세 및 통관제도

- 특정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 2002.5 시행
 - 장남감, 전자, 신발, 의류, 직물제품, 옥수수, 사탕수수료 등
 - 별도의 수입허가 필요

- LABEL부착제도 : 2010.5 시행
 - 제품과 포장에 인도네시아어 표기 의무 (가전,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등)

- 정부지정 5대 품목 규제조치: 2009.1 시행
 - 전자제품, 의류, 완구, 신발, 식음료
 - 일반 수입허가외 등록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허용
 - 5대 지정항 및 공항으로 수입 (선적전 검사 필) :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마카시르, 리아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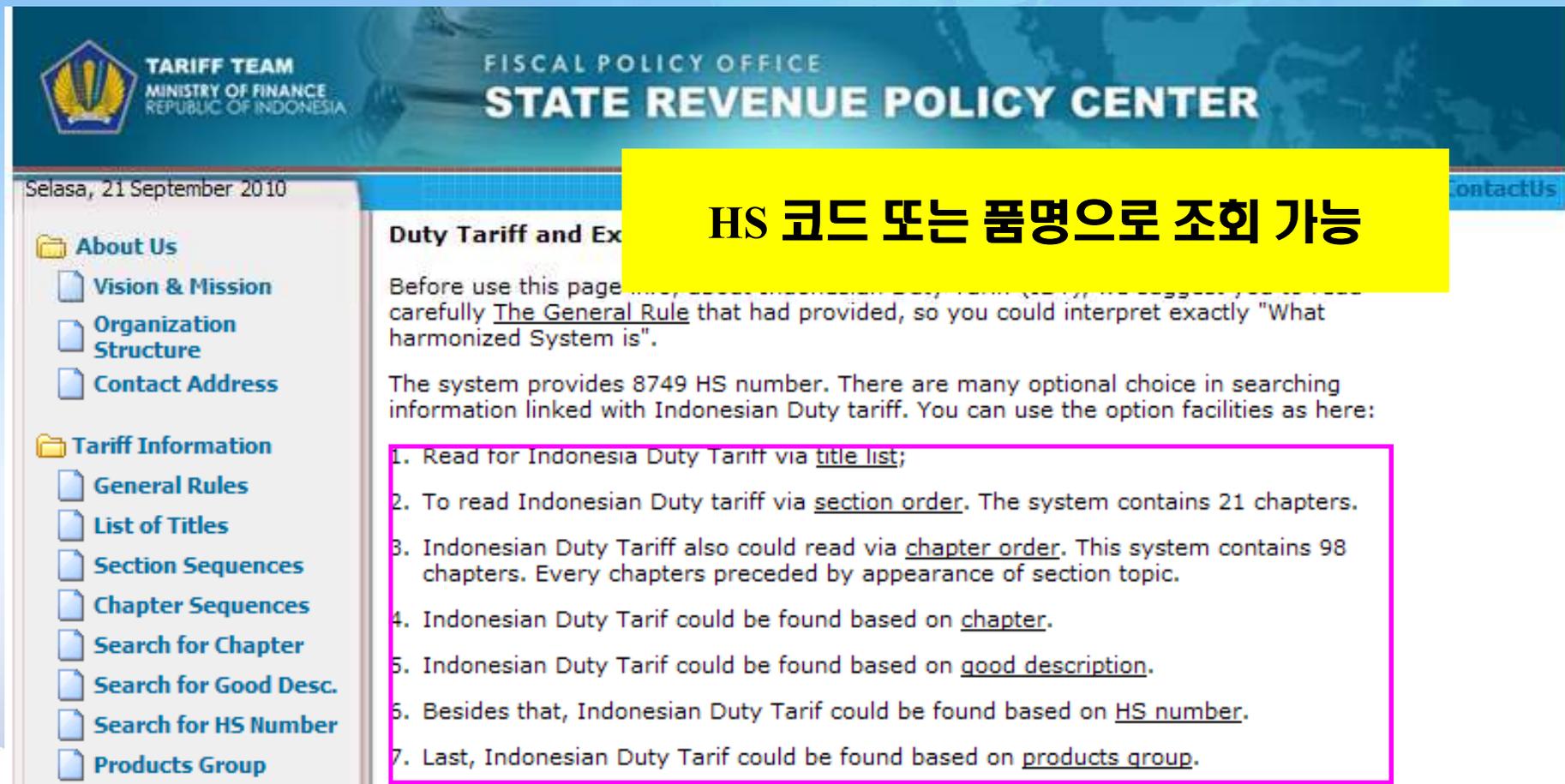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질의 1. 한국에서 인니로 수출시 인니의 MFN, FTA 양허 관세율 확인 방법

- 상품자유화 방식 (Modality) 이해
 - Normal Track (2010까지 철폐, 단 아세안 6개국 2012년까지)
 - Sensitive Track 및 Highly Sensitive Track : 2016년까지 감축

- MFN 및 양허관세율 조회방법
 - 한국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인니 : 인니 재무부 Tariff 팀 (<http://www.tarif.depkeu.go.id>)
대사관 홈페이지 (<http://idn.mofat.go.kr>)

인니 재무부 Tariff 팀 영문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Tariff Team,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The page title is "Duty Tariff and Ex...". The main content area is highlighted with a yellow box containing the text "HS 코드 또는 품명으로 조회 가능".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sections like "About Us" and "Tariff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list of search options for Indonesian Duty Tariff.

Selasa, 21 September 2010

TARIFF TEAM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FISCAL POLICY OFFICE
STATE REVENUE POLICY CENTER

contactUs

HS 코드 또는 품명으로 조회 가능

Duty Tariff and Ex

Before use this page... carefully The General Rule that had provided, so you could interpret exactly "What harmonized System is".

The system provides 8749 HS number. There are many optional choice in searching information linked with Indonesian Duty tariff. You can use the option facilities as here:

1. Read for Indonesia Duty Tariff via title list;
2. To read Indonesian Duty tariff via section order. The system contains 21 chapters.
3. Indonesian Duty Tariff also could read via chapter order. This system contains 98 chapters. Every chapters preceded by appearance of section topic.
4. Indonesian Duty Tariff could be found based on chapter.
5. Indonesian Duty Tariff could be found based on good description.
6. Besides that, Indonesian Duty Tariff could be found based on HS number.
7. Last, Indonesian Duty Tariff could be found based on products group.

Navigation Menu:

- About Us
 - Vision & Mission
 - Organization Structure
 - Contact Address
- Tariff Information
 - General Rules
 - List of Titles
 - Section Sequences
 - Chapter Sequences
 - Search for Chapter
 - Search for Good Desc.
 - Search for HS Number
 - Products Group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질의 2. 한-인니간 무역 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 **AK FTA 관세양허표 확인**
- **원산지요건** :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 **해당 업체 품목 원산지 기준 확인 : 관세청 FTA 포탈 조회**
- **운송요건**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 **절차요건** : 적용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
→ **수입 신고시 원산지 증명서 세관에 제출**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질의 3.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입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환급 여부

- 인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시 환급 불가
- 한국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제출시 환급 가능
 - ※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인니 불가 (라오스, 미얀마 확인 중)
 - ※ 한국제외 타 아세안 국가는 수입신고 시 소급적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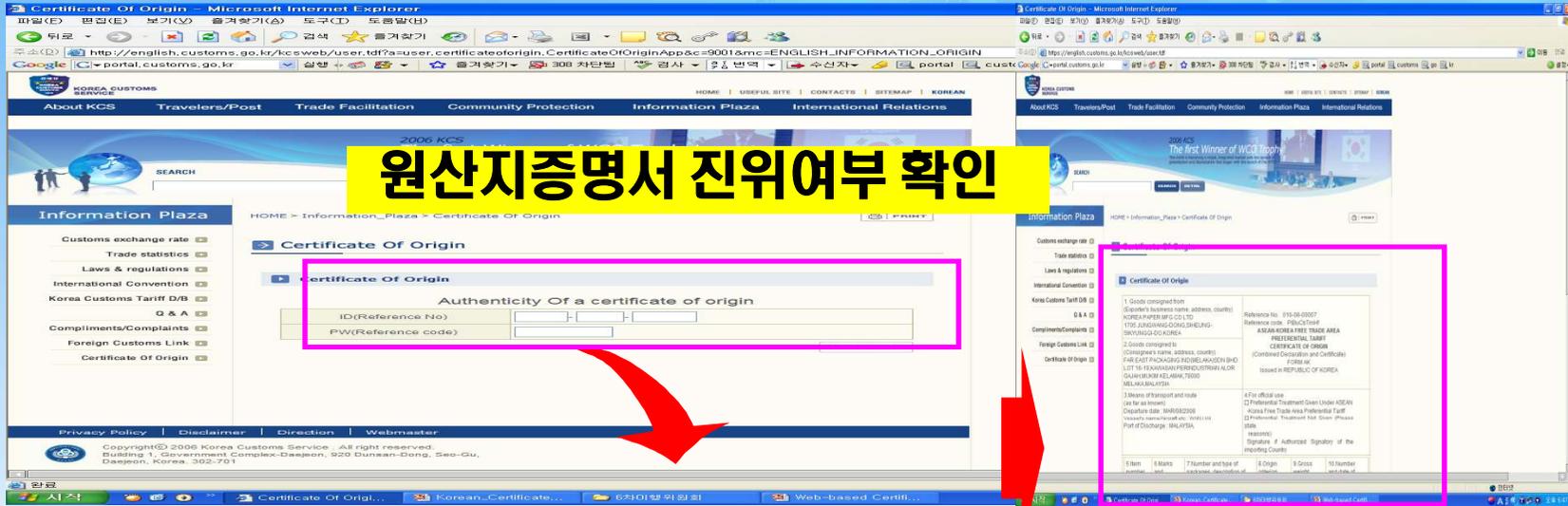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기관발급)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무역부, 85개 기관)
한 국	세관(47개), 상공회의소(67개)

- *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C/O에 대한 사후 추정 사례 빈번
- * 한국은 전자발급, 인니는 85개 중 28개 기관 전자 발급

<참고사항>

영문 관세청 홈페이지 ([http:// english.customs.go.kr](http://english.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영문 홈페이지 (<http://english.korcham.net>)

Authenticity of a documents certified by KCCI
Republic of Korea

· Issued Year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질의 4. 인니 관세양허표상에 별표의 의미 [상호대응세율]

□ 상호 대응세율이란

- FTA 체약 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 양허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지 않는 제도

□ 인니 상호대응세율 운영사례

- 양허세율표 **비고란에 “*” 표시** → 양허세율표 마지막 페이지에 별표표시 품목은 MFN 적용토록 하여 **혼선 초래**
- 재무부에서 비고란 별표를 삭제, MFN 세율 명시하여 개정조치
['09.12.4, 대사관 시정요구 수용]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1. FTA 상호 대응세율 시정조치 및 이행 개선

□ 민원개요

- 인니 정부는 한국산 폴리프로필렌에 대해 상호대응세율 10% 부과
- I사는 동 대응세율 부과가 타당한지 당관에 민원제기 (09.7)

□ 조치결과

- 인니 재무부, 무역부 및 관세청에 부당성 설명 및 시정 조치 요구
 - AK FTA부속서 2 제7조에 따라 관세율 인하 요청
- 인니 재무부에서 장관령 개정하여 시정조치(09.12.4) : 10%→5%
- 혼선을 초래한 대응세율 이행제도 개선
 - 양허세율표 **비고란에 “*” 표시 → 해당 관세율 명시**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인니 AK FTA 상호대응세율표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2. 제3국 송장 원산지 증명서 관세환급 조치

□ 민원 개요

- 한국 소재 E사는 싱가포르 P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니산 LPG를 수입 (송장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발행)
- 인니에서 제3국 발행 송장에 의한 Form AK 가 아닌 일반 Form AK를 발급받은 결과 한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못 받음
 - 당관에 민원 제기(10.7월)

□ 조치결과

- 인니 무역부 및 발급기관에 Form AK 정정 조치 요구
- 인니 무역부 재발급 조치(10.8월) 및 관세환급

제3국 송장 발행 Form AK

■ 제3국 송장(invoice) 발행 인정 FTA

□ 아세안 FTA (AFTA), 한-아세안 FTA (AK FTA), 인니-일본 EPA(IJ-EPA)

※ 중-아세안 FTA 2011.10월부터 인정

■ 제3국 송장(invoice) 발행 Form AK 기재방법

□ C/O 해당란에 체크하고, 7번 란에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 기재

□ C/O 상의 FOB가격은 C/O 발행국의 FOB가격을 기재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3. 선적일전 발행 원산지 증명서 관세환급

□ 민원 개요

- 인니 K 사는 한국에서 선적일전 발급된 Form AK에 대해 인니 관세 당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아 당관에 민원 제기(10.6월)

※ AK FTA Appendix 1 제7조 : “ at the time of exportation” 해석문제

□ 조치 결과

- 인니 관세청, 무역부와 협의 및 애로해소 요청
- 인니 관세청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당해 민원 해결(10.8월)

※ 인니 관세청에서 10. 7. 31 이전 수입신고 분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 인니 무역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선적일전 발급 가능함을 통보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4. Form AK 경미 실수 특혜관세 배제 시정

□ 민원 개요

- H사는 한국에서 발급한 Form AK 상 HS 코드가 인니의 HS 코드와 일치 하지 않아 인니 세관당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함
- 당관에 이에 대한 해결 요청 (10.6월)

□ 조치 결과

- 인니 관세청에게 동 사안은 AK FTA Appendix 1 제 12조 상의 경미한 차이(Minor Discrepancies)에 해당되므로 시정요구
- 인니 관세청 당관 요구에 동의하여 시정 조치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5. 대사관 홈페이지 FTA 정보 제공

□ 배경

- 수라바야, 족자, 스마랑 등 관세 설명회 시 신속한 FTA 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
-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를 위해 ON-LINE FTA 정보제공 필요 증대

□ 조치 결과

- 한국 관세청과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관세 및 FTA」 배너 신설 (10. 8월)
 - 한국 및 주재국 관세 및 FTA 정보 제공

<참고사항>

대사관 홈페이지 관세 및 FTA 배너 신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수요일 : 1973년 09월 17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제/통/상

- 새 소식
- 시장정보
- 경제개황
- 해외입찰
- 양자경제통상
- 기업서비스
- 경제통상자료
- 에너지, 산림
- 세정 안내
- 관세 및 FTA**
 - 한국 관세 및 FTA 안내
 - 주재국 관세 및 FTA 안내

한국 관세 및 FTA 안내

Home > 경제통상 > 관세 및 FTA > 한국 관세 및 FTA 안내

제외국민(진출기업), 외국인을 위한 관세 및 FTA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시스템
- FTA 포털정보시스템
-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조회 시스템
- 수출입물품 통관제도
- Korean Customs System
- 이전가격 관세평가 제도
- 해외 여행자 세관 절차 안내
- 이사물품 통관제도

QUICK MENU

- 전자민원
- 이민정보
- 사이버 기업서비스
- 공관주소
- 비자신청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제/통/상

- 새 소식
- 시장정보
- 경제개황
- 해외입찰
- 양자경제통상
- 기업서비스
- 경제통상자료
- 에너지, 산림
- 세정 안내
- 관세 및 FTA**
 - 한국 관세 및 FTA 안내
 - 주재국 관세 및 FTA 안내

주재국 관세 및 FTA 안내

Home > 경제통상 > 관세 및 FTA > 주재국 관세 및 FTA

총 8건 중, 현재페이지 1/1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8	인니관세행정 2010년도 운영방안	관리자	2010.09.15	
7	인도네시아의 한-아세안 FTA 양허세를 인하게...	관리자	2010.09.14	
6	인도네시아의 중-아세안 FTA 관세인하 계획(N...	관리자	2010.09.13	
5	인도네시아의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를	관리자	2010.09.10	
4	<인니 관세청 지침>FTA 특혜관세 적용...	관리자	2010.09.09	
3	인니 관세청 FTA 특혜심사 규정 개정	관리자	2010.09.08	
2	인도네시아 주류에 대한 관세부과방법 변경	관리자	2010.09.07	
1	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기준	관리자	2010.09.01	

제목 Search

<참고사항>



인니 재무부 개정, 상호대응세율표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	POSSUB POS READING/ SUB READING	URAIAN BARANG	DESCRIPTION OF GOODS	% BEA MASUK / % IMPORT DUTY				SEMULA KETERANGAN NOTES	MENJADI %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RI KOREA / % IMPORT DUTY ON GOODS IMPORTED FROM KOREA
				2009	2010	2011	2012		
(1)	(2)	(3)	(4)	(5)	(6)	(7)	(8)	(9)	(10)
5578	5205.48.00.00	-Ukuran tap besang tunggal kurang dari 83.33 desitels (melebihi satu meter 120 tap besang tunggal)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83.33 desitels (exceeding 12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0	0	0	0	*	5
3602	5208.12.00.00	-Tamanai polon, beratnya lebih dari 100 gram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ram	0	0	0	0	*	10
3608	5208.29.00.00	-Kain lainnya	-Other fabrics	0	0	0	0	*	5
3715	5402.51.00.00	-Dari poliester	-Of polyester	0	0	0	0	*	5
3718	5402.44.00.00	-Elastomer	-Elastomeric	0	0	0	0	*	5
3721	5402.47.00.00	-Lain-lain, dari poliester	-Other, of polyester	0	0	0	0	*	5
3722	5402.48.00.00	-Lain-lain	-Other	0	0	0	0	*	MFN
4130	6103.42.00.00	-Dari serat sintetik	-Of synthetic fibres	0	0	0	0	*	MFN
4224	6115.99.00.00	-Dari bahan tekstil lainnya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0	0	*	MFN
4258	6202.1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MFN
4264	6203.1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MFN
4275	6203.3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5	5	0	*	MFN
4276	6203.32.00.00	-Dari kapas	-Of cotton	0	0	0	0	*	MFN
4281	6203.4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MFN
4288	6204.1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MFN
4300	6204.3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5	5	0	*	MFN
4301	6204.32.00.00	-Dari kapas	-Of cotton	0	0	0	0	*	MFN
4313	6204.5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MFN
4319	6204.61.00.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5	5	0	*	MFN
4320	6204.62.00.00	-Dari kapas	-Of cotton	0	0	0	0	*	MFN
4354	6208.25.00.10	-Dari sutera	-Of silk	5	5	5	0	*	MFN
4355	6208.29.00.20	-Dari rami	-Of ramie	0	0	0	0	*	MFN
4356	6208.29.00.99	-Lain-lain	-Other	0	0	0	0	*	8
4405	6214.19.00.10	-Batik	-Batik	0	0	0	0	*	8
4406	6214.19.04.90	-Lain-lain	-Other	0	0	0	0	*	8
4420	6236.00.10.00	-Sarung tangan, mitten dan mita pelindung kerja	-Protective work gloves, mittens and mitts	0	0	0	0	*	8
4431	6216.00.91.00	-Dari wol atau bulu hewan halu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0	0	*	8
4432	6216.00.92.00	-Dari kapas	-Of cotton	0	0	0	0	*	8
4433	6216.00.99.00	-Lain-lain	-Other	0	0	0	0	*	8
4443	6911.00.00.00	-Bata batu, blok, ubin dan barang keramik lainnya dari tanah liat (misalnya, keramik, terpalite atau diatomite) atau dari tanah mengandung silika amorfus lainnya	-Bricks, blocks, tiles and other ceramic goods of siliceous fossil fuels (for example, keramik, terpalite or diatomite) or of similar siliceous earths	0	0	0	0	*	8
4457	6907.90.00.00	-Lain-lain	-Other	0	0	0	0	*	8
4459	6908.90.10.00	-Ubin polos	-Plain tile	5	5	5	0	*	8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6. 한국업체 인니 피아노 기증 건 관세면제 조치

□ 민원개요

- 한국업체 B사는 인니 교육부와 MOU 체결, 디지털 피아노 30,000 대 기증키로 함
- 피아노에 대한 관세면제 승인이 나지 않는 등 통관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 발생

□ 조치 결과

- 인니 재무부 및 관세청을 방문 해소 요청
- 인니 재무부 기증면세권자를 종전 재무부장관에서 관세청장으로 위임하는 법규 개정 후 관세청장 승인으로 통관조치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7. 포스코 덤핑방지관세 부과 취소

□ 개요

- 인니 관세청에서 포스코에서 생산한 열연철강제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3.8% 덤핑방지 관세 부과
-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포스코인 경우 덤핑방지 부과 대상이 아니나 수출자가 대우로 되어 있어 관세부과 조치 (약 6만불)

□ 조치 결과

- 인니 관세당국을 방문 철회요청, 인니 관세청에서 세관당국, 포스코관계자, 대사관 등이 참석하여 대책회의 개최
- 인니 관세청 덤핑방지 부과 취소 결정 (11.8월)

IV. 질의회신 및 통관애로 해소사례

애로해소 8. 하청규제 철회로 봉제업 폐업위기 해소

□ 개요

- 인니 정부에서 보세구역에서 주요공정 하청규제 법규 개정 및 시행(12.1)
- KOGA 대사관에 시행유예 등 규제해소 요청 (2011.11월)
- 한인 봉제업체 350여개 (40만 고용) 심각한 위기
 - 특히 영세하청업체 100여개(10 만여명) 도산 및 폐업위기

□ 조치 결과

-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 재무부장관, 관세청장 애로전달 및 해소요청
재무부, 경제조정부, 관세청간 긴급대책회의 20여 차례 개최
봉제협회 자정결의문 인니 정부 제출 (12.3)
- 인니 정부 재무부 장관령 1차 개정 : 최장 금년말까지 시행 유예 (1.18)
- 인니 정부 재무부 장관령 2차 개정 : 하청규제 철회 (3.16)



감사합니다

62-21-520-1915
leeds@customs.go.kr

KOREA CUSTOMS SERVICE